KOSHA GUIDE C - 54 - 2012

- (나) "라이너플레이트(Liner Plate: 유실방지 토공판, 이하 'L.P'라 한다)"라 함은 심 형기초 굴착공사에서 조립구조의 흙막이지보공을 말한다.
- (다) "각입"이라 함은 기초 굴착공사를 완료한 다음 철탑구조물 최하단에 위치하는 기초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공사 준비

- (1) 철탑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근로자의 유해·위험방지에 필요 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공사 착공 이전에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(2) 철탑의 높이가 31 m 이상이거나 굴착 깊이가 10 m 이상인 철탑공사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수립하고 제출하는 등 노동부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3)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는 현장 내에 비치·활용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## 5. 심형기초 굴착작업

## 5.1 측량작업 시 유의사항

(1) 철탑의 설치위치 등 측량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안전회의를 실시하고, 근로자에게 측량내용 및 위험요인, 피난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.